

의안번호	제 52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52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1) 「지방자치법」 제63조 → 제71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 제63조제1항 (안 제14조)
- 3) 「지방자치법」 제71조 → 제79조 (안 제70조)
- 4) 「지방자치법」 제78조 → 제86조 (안 제82조)

나.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2항).

다. 군정질문의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을 변경하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제71조, 제79조, 제8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4항 중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1조 ----- -----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인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p>	<p>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79조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⑤ (생략)</p>	<p>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제86조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